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연재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①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류 기타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됨.

② 동일 사업장안에 규모 미만의 동종 시설이 2대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서 규정된 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는 합산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③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 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④ 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의 규모로 산출한다.

⑤ 원료 또는 부원료 중에 특정유해물질 성분이 포함되어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를 수반하여 해당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말하며, 단순 연소 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함

※ B-C 유종에는 중금속 등 특정대기오염물질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는데도 B-C 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않음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사전 절차)

구분	내 용	방 법
배출 시설 설치 허가	1.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안에(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허가신청서] / [배출시설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군수에게 신청 1)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외의 모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자중	

구분		내 용	방 법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배출시설변경허가	1.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배출시설 변경 신고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는 해당시설 변경전에, 제3호 및 제4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함.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를 한 자 중	배출시설 변경 신고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는 해당시설 변경전에, 3호 및 제4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신청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법 제8조)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 자료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설치허가를 받은 자중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실·무·코·너 | 배출시설 관리

※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자(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할 수 있는 경우
 - 가.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 나. 최초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30% 이내로 증설·대체·개선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주의사항

- ①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 행정처분 및 항목별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허용기준

각 시설의 배출 오염물질(허가증 기재) 및 용량 등을 감안한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 짐.(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8 참고)

- ② 운영시 금지행위 준수 의무 ⇒ 사안별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병과

금지행위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에 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존 의무 ⇒ 과태료 부과

④ 측정기기 부착 및 정상운영 의무

⇒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적산전력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가. 사업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 할 수 있다.

- ⑤ 환경기술인 선임 및 정기교육 이수 의무 ⇒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 교육 [절차 : 교육통지가 있을 경우 해당자 교육 이수]
 - 신규교육 : 환경관리인으로 인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
다음호에 계속...